

# 부산직할시사하구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

|      |     |
|------|-----|
| 의안번호 | 265 |
|------|-----|

제출년월일 : 1994. 11. 21

제 출 자 : 사 하 구 청 장

## 1. 폐지이유

- 간이상수도에 관한 사항이 공중 위생법 제31조에 의거 공동급수시설 유지관리 조례를 제정 (1988. 6. 28)하여 자치구에서 관리운영하여 왔으나,
- 공중위생법 제31조가 법률 제4636호(1993. 12. 27)로 폐지되고, 간이상수도에 관한 관리운영이 수도법 제3조 제9호의 적용을 받도록 일원화 됨에 따라
- 간이상수도 관리 업무가 상수도사업본부로 이관되어, 사하구 공동급수시설 유지관리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임.

## 2. 주요골자

- 부산직할시 사하구 공동급수시설 유지관리 조례는 이를 폐지함.

## 3. 관계법령

- 공중위생법 제31조
- 수도법 제3조 제9호
- 부산직할시 직제규칙 중 개정규칙('94. 7. 8 규칙 제 2850호)

## 부산직할시 사하구 공동급수시설 유지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

부산직할시 사하구 공동급수시설 유지관리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